

감정평가서

건명	박종학 소유물건 (2025타경3931)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법보좌관 조성권
감정서번호	KS250717-2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사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경상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양보식

감정평가액	일억구천일백칠십육만육천원정(₩191,766,000.-)		
-------	--------------------------------	--	--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법보좌관 조성권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경매1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박종학 (2025타경3931)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11.20	2025.11.14 ~ 2025.11.15	2025.11.21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4,433 560평 이	토지	6,284 여	- 백	191,766,000
합계					₩191,766,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가격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안덕리 “뫼산마을” 남서측 인근(일련번호(1~3), “뫼산마을” 북서측 인근(일련번호(4)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부동산 임의경매(2025타경3931)를 위한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 대상물건 개요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지세	개별공시지가(2025년)(원/㎡)
1	포항시 북구 신광면 안덕리	992	답	3,737	대부분 임야화된 목답 (장기간 휴경지), 일부 전	보전관리	세로(가)	부정형 완경사	12,000
2	포항시 북구 신광면 안덕리	992- 1	답	88	임야화된 목답 (장기간 휴경지)	계획관리	맹지	부정형 완경사	16,000
3	포항시 북구 신광면 안덕리	992- 2	답	608	임야화된 목답 (장기간 휴경지)	계획관리	맹지	부정형 완경사	16,000
4	포항시 북구 신광면 안덕리	1012	답	560평 (토지 대장상 면적: 1,851㎡)	임야화된 목답 (장기간 휴경지)	보전관리	맹지	부정형 완경사	12,000

감정가격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1) 기준시점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호에 따라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11.20일로 하였음.

(2)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의 최종 실지조사 기간은 2025.11.14~ 2025.11.15일이고, 공부를 기준으로 토지의 고저, 도로접면, 이용상황, 주변상황 등 가격형성요인을 조사하였음.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1) 기준가치

본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음.

(2)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II.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그 밖의 사항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실무 기준」 등 감정평가 관련 제 법규와 감정평가에 관한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

1. 감정평가방법 관련 규정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 제7조 (개별물건기준원칙 등)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가격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2) 제11조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방식 중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감정평가방법	내용
공시지가 기준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거래사례 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비교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원가법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수익환원법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3) 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격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 (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감정가격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② 감정평가법인 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시산가액”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법 중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격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격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어느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격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제14조 (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본문[본문: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1)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가액을 산출하되, 실거래자료를 이용한 그 밖의 요인 산정 등을 통하여 시장가격의 적정성을 반영하여 그 가액을 결정하였으며,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격과의 비교 검토는 생략하였음.

(2) 본건 토지 중 일부가 소하천구역 저축이나 소하천구역 저축 면적 비율이 미미하여 이에 구매됨이 없이 토지를 감정평가하였음.

감정가격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3. 일괄·구분·부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없음.

4. 그 밖의 사항

없음.

감정가격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Ⅲ. 토지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 공시지가기준법의 정의

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2. 비교 표준지의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평가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하였음. 다만, 신광면 안덕리에는 보전관리지역 농경지 표준지가 없어 안덕리에 인접한 신광면 기일리 소재 보전관리지역 농경지 표준지를 선정하였음.

(공시기준일 : 2025.01.01)

표준지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비고
A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안덕리 735-1	1,488	답	답	계획 관리	맹지	사다리 완경사	19,200	
B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기일리 529-1	851	전	전	보전 관리	세로 (가)	부정형 완경사	12,100	

감정가격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3.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공시기준일 당시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시점의 가치수준으로 수정하는 작업으로, 지가변동률에 의한 방법과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일반재화를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적인 물가지수로서 당해 지역의 지가변동추이를 적정히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시점수정하였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계획관리지역(2025.01.01.~2025.11.20.)

2025.01.01 ~ 2025.10.31 : 0.880

2025.10.01 ~ 2025.10.31 : 0.073

누계(2025.01.01~2025.11.20) : 0.928

$(1 + 0.00880) * (1 + 0.00073 * 20/31)$

≙ 1.0092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보전관리지역(2025.01.01.~2025.11.20.)

2025.01.01 ~ 2025.10.31 : 0.291

2025.10.01 ~ 2025.10.31 : 0.063

누계(2025.01.01~2025.11.20) : 0.332

$(1 + 0.00291) * (1 + 0.00063 * 20/31)$

≙ 1.00332

* 기준시점 현재 2025년 11월 이후 지가변동률이 미고시되어 2025년 10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여 기간비율로 배분하였음.

4. 지역요인 비교

본건 토지는 비교 표준지와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 대등함.(1.000)

5. 개별요인 비교

비교 표준지와 본건 토지의 가로, 접근, 환경, 획지, 행정적 및 기타 조건을 비교하여 개별요인 비교치를 결정하였음.

감정가격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비교표준지(B) : 본건 일련번호(1)]

농경지대의 개별요인			격차율	비 고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가로조건	접근도로의 상태	접근도로의 배치, 폭, 구조 등	1.00	비교표준지와 본건은 가로조건 대등함
	농로의 상태	농로의 폭, 포장 등		
접근조건	교통의 편의	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1.40	비교표준지 대비 본건이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접근성 우세함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접근성		
		출하지와의 접근성		
환경조건	자연환경	토양 토질의 양부	1.15	비교표준지 대비 본건이 일조 등 자연환경 우세함
		일조, 통풍 등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지조건	규모, 형상 등	면적, 형상	0.70	본건은 장기간휴경으로 임야화된 목답으로 이용상황에서 열세함
	고저 등	고저(경사지 등)		
		경사의 방향		
	경작의 장애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토지이용상황	토지이용상황 등		
토양 오염	토양오염 상태 및 정화비용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 정도	규제의 정도	1.00	공히 보전관리지역이며 행정적조건 대등함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비교표준지와 본건은 기타조건 대등함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1.00× 1.40× 1.15× 0.70× 1.00× 1.00=1.127		

감정가격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비교표준지(A) : 본건 일련번호(2~3)]

농경지대의 개별요인			격차율	비 고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가로조건	접근도로의 상태	접근도로의 배치, 폭, 구조 등	1.00	비교표준지와 본건은 가로조건 대등함
	농로의 상태	농로의 폭, 포장 등		
접근조건	교통의 편의	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1.00	비교표준지와 본건은 접근조건 대등함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접근성		
		출하지와의 접근성		
환경조건	자연환경	토양 토질의 양부	1.00	비교표준지와 본건은 환경조건 대등함
		일조, 통풍 등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지조건	규모, 형상 등	면적, 형상	0.70	본건은 장기간휴경으로 임야화된 목답으로 이용상황에서 열세함
	고저 등	고저(경사지 등)		
		경사의 방향		
	경작의 장애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토지이용상황	토지이용상황 등		
토양 오염	토양오염 상태 및 정화비용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 정도	규제의 정도	1.00	공히 계획관리지역이며 행정적조건 대등함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비교표준지와 본건은 기타조건 대등함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1.00× 1.00× 1.00× 0.70× 1.00× 1.00=0.700		

감정가격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비교표준지(B) : 본건 일련번호(4)]

농경지대의 개별요인			격차율	비 고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가로조건	접근도로의 상태	접근도로의 배치, 폭, 구조 등	0.85	비교표준지 대비 본건이 농로 상태 열세함
	농로의 상태	농로의 폭, 포장 등		
접근조건	교통의 편의	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0.80	비교표준지 대비 본건이 취락과의 접근성 열세함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접근성		
		출하지와의 접근성		
환경조건	자연환경	토양 토질의 양부	1.00	비교표준지와 본건은 환경조건 대등함
		일조, 통풍 등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지조건	규모, 형상 등	면적, 형상	0.65	본건은 장기간휴경으로 임야화된 목답으로 이용상황에서 열세하고 또한 고저에서 열세함
	고저 등	고저(경사지 등)		
		경사의 방향		
	경작의 장애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토지이용상황	토지이용상황 등		
토양 오염	토양오염 상태 및 정화비용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 정도	규제의 정도	1.00	공히 보전관리지역이며 행정적조건 대등함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비교표준지와 본건은 기타조건 대등함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0.85× 0.80× 1.00× 0.65× 1.00× 1.00=0.442		

감정가격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6.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그 밖의 요인 보정”이란,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외에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요인에 대한 보정임. 그 밖의 요인 보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41- 36538, 1991.12.28.), 대법원판례[003다 38207(2004.05.14.선고), 2002두5054 (2003.07.25.선고), 98두6067(1998.07.10.선고), 92누16300(1993.09.10. 선고)] 등에 의거하여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평가사례 또는 거래사례와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해서임.

(2) 인근지역 평가사례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토지단가 (원/㎡)	용도지역	기준시점	비고
ㄱ	포항시 북구 신광면 안덕리 740-*	답	4,890	61,600	계획관리	2020. 02.21	경매
ㄴ	포항시 북구 신광면 안덕리 574-*	답	2,334	80,000	계획관리	2021. 03.30	담보
ㄷ	포항시 북구 신광면 안덕리 98*	답	4,734	14,000	보전관리	2022. 10.05	공매
ㄹ	포항시 북구 신광면 안덕리 719-*	답	20	83,000	계획관리	2023. 10.31	취득 처분
ㅁ	포항시 북구 신광면 안덕리 99*	답	1,885	42,000	보전관리	2025. 06.28	경매

※(참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번의 마지막 숫자는 *으로 표시했음.

감정가격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3) 인근지역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토지단가 (원/㎡)	용도지역	거래시점	비고
a	포항시 북구 신광면 안덕리 542-*	전	1,537	91,086	계획관리	2021. 06.11	실거래 자료
b	포항시 북구 신광면 안덕리 62*	답	1,915	60,574	계획관리	2021. 12.24	실거래 자료
c	포항시 북구 신광면 안덕리 84*	답	2,113	62,849	계획관리	2022. 10.06	실거래 자료
d	포항시 북구 신광면 기일리 107*	전	2,330	15,879	보전관리	2024. 07.11	실거래 자료

※(참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번의 마지막 숫자는 *으로 표시했음.

(4) 비교사례의 선정

위 사례 중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실제 거래사례로서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선정하였음.

(5)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산정

거래사례기준 표준지 가격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는 -----

표준지의 시점수정

감정가격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비교사례 “기호 (b)” : 비교표준지 “기호 (A)”]

비교 표준 지 (A)	표준지의 시점수정 (①)	공시지가 (2025.01.01)	시점수정 (2025.01.01.~ 2025.11.20)			표준지의 시점수정
		19,200	1.00928			19,378
	거래사례 기준 표준지가격 (②)	거래사례	시점수정치	지역요인	개별요인	거래사례기준 표준지가격
		60,574	1.05669	1.000	0.998	63,880
	격차율	격차율(②/①)				
		63,880 / 19,378 ≙ 3.297				

① 시점수정 (2021.12.24~ 2025.11.20, 포항시 북구 계획관리지역): 1.05669

② 지역요인 비교: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대등함: 1.000

③ 개별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치	
조건	비교내용	사례 (b)	표준지 (A)
가로 조건	표준지가 도로에서 열세함	1.00	0.95
접근 조건	표준지가 취약접근성 우세함	1.00	1.05
환경 조건	환경조건 대등함	1.00	1.00
획지 조건	획지조건 대등함	1.00	1.00
행정적 조건	공히 계획관리지역이며 행정적조건 대등함	1.00	1.00
기타 조건	기타조건 대등함	1.00	1.00
누계		1.000	0.998

감정가격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비교사례 “기호 (d)” : 비교표준지 “기호 (B)”]

비교 표준 지 (A)	표준지의 시점수정 (①)	공시지가 (2025.01.01)	시점수정 (2025.01.01.~ 2025.11.20)			표준지의 시점수정
		12,100	1.00332			12,140
	거래사례 기준 표준지가격 (②)	거래사례	시점수정치	지역요인	개별요인	거래사례기준 표준지가격
		15,879	1.00592	1.000	1.980	31,627
	격차율	격차율(②/①)				
		31,627 / 12,140 ≙ 2.605				

- ① 시점수정 (2022.07.11~ 2025.11.2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보전관리지역): 1.00592
- ② 지역요인 비교: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대등함: 1.000
- ③ 개별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치	
조건	비교내용	사례 (d)	표준지 (B)
가로 조건	표준지가 도로에서 우세함	1.00	1.10
접근 조건	표준지가 취락접근성에서 우세함	1.00	1.50
환경 조건	환경조건 대등함	1.00	1.00
획지 조건	표준지가 고저에서 우세함	1.00	1.20
행정적 조건	공히 보전관리지역이며 행정적조건 대등함	1.00	1.00
기타 조건	기타조건 대등함	1.00	1.00
누계		1.000	1.980

감정가격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5)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위 격차율, 인근지역 토지의 일반적인 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표준지(A)는 3.29로, 표준지(B)는 2.60로 결정함.

7.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일련 번호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1	12,100	1.00332	1.000	1.127	2.60	35,573	36,000
2	19,200	1.00928	1.000	0.700	3.29	44,628	45,000
3	19,200	1.00928	1.000	0.700	3.29	44,628	45,000
4	12,100	1.00332	1.000	0.442	2.60	13,951	14,000

감정가격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V.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1. 결정의견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가액을 산출 하되, 실거래자료를 이용한 그 밖의 요인 산정과 시세 검토를 통하여 시장가격의 적정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감정평가액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	적용단가 (원/㎡)	감정평가액	비 고
1	포항시 북구 신광면 안덕리 992	답	3,737	36,000	134,532,000	대부분 임야화된 목답 (장기간 휴경지), 일부 전
2	포항시 북구 신광면 안덕리 992- 1	답	88	45,000	3,960,000	임야화된 목답 (장기간 휴경지)
3	포항시 북구 신광면 안덕리 992- 2	답	608	45,000	27,360,000	임야화된 목답 (장기간 휴경지)
4	포항시 북구 신광면 안덕리 1012	답	1,851	14,000	25,914,000	임야화된 목답 (장기간 휴경지)
합 계					191,766,000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안덕리	992	답	보전관리지역	3,737	3,737	36,000	134,532,000	대부분 임야화된 목답 (장기간 휴경지) 일부 전. 일부 소하천구역 저촉
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안덕리	992-1	답	계획관리지역	88	88	45,000	3,960,000	임야화된 목답 (장기간 휴경지)
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안덕리	992-2	답	계획관리지역	608	608	45,000	27,360,000	임야화된 목답 (장기간 휴경지)
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안덕리	1012	답	보전관리지역	560평	1,851	14,000	25,914,000	임야화된 목답 (장기간 휴경지)
합 계								₩191,766,000.-	
				이	하	여	백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안덕리 "뫼산마을" 남서측 인근(일련번호(1~3)), "뫼산마을" 북서측 인근(일련번호(4))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대체로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 (1): 본건 중간 일부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2~3): 본건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4): 본건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산간에 위치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불편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 (1): 동측 하향 완경사지대에 소재하는 부정형 토자로서, 본건 토지의 중간을 통과하는 비포장도로의 서측 부분은 도로보다 높고 동측 부분은 도로보다 낮음. 본건 토지의 중간쯤에 소재하는 일부 전 부분(개략적으로 추정해서 10%미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기간 휴경으로 임야화(소나무, 잡목, 잡초 무성)된 목답임.
 (2): 동측 하향 완경사지대에 소재하는 사다리형 토자로서, 장기간 휴경으로 임야화(잡목, 잡초 무성)된 목답임.
 (3): 동측 하향 완경사지대에 소재하는 부정형 토자로서, 장기간 휴경으로 임야화(잡목, 잡초 무성)된 목답임.
 (4):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대에 소재하는 부정형 토자로서, 장기간 휴경으로 임야화(잡목, 잡초 무성)된 목답임.

(4) 인접 도로상태

- (1):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토지 중간쯤으로 폭 약 3미터 정도의 비포장도로가 통과하고 있음.
 (2~4): 지적도상 맹지임.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젓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 소하천구역(지덕천),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제7조의 2).
- (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젓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제7조의 2).
- (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젓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젓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제7조의 2).
- (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젓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제7조의 2), 영농여건불리농지.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 (1): 본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대부분 임야화 된 묵답(장기간 휴경지)이고 일부 전"임.
- (2~4): 본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임야화 된 묵답(장기간 휴경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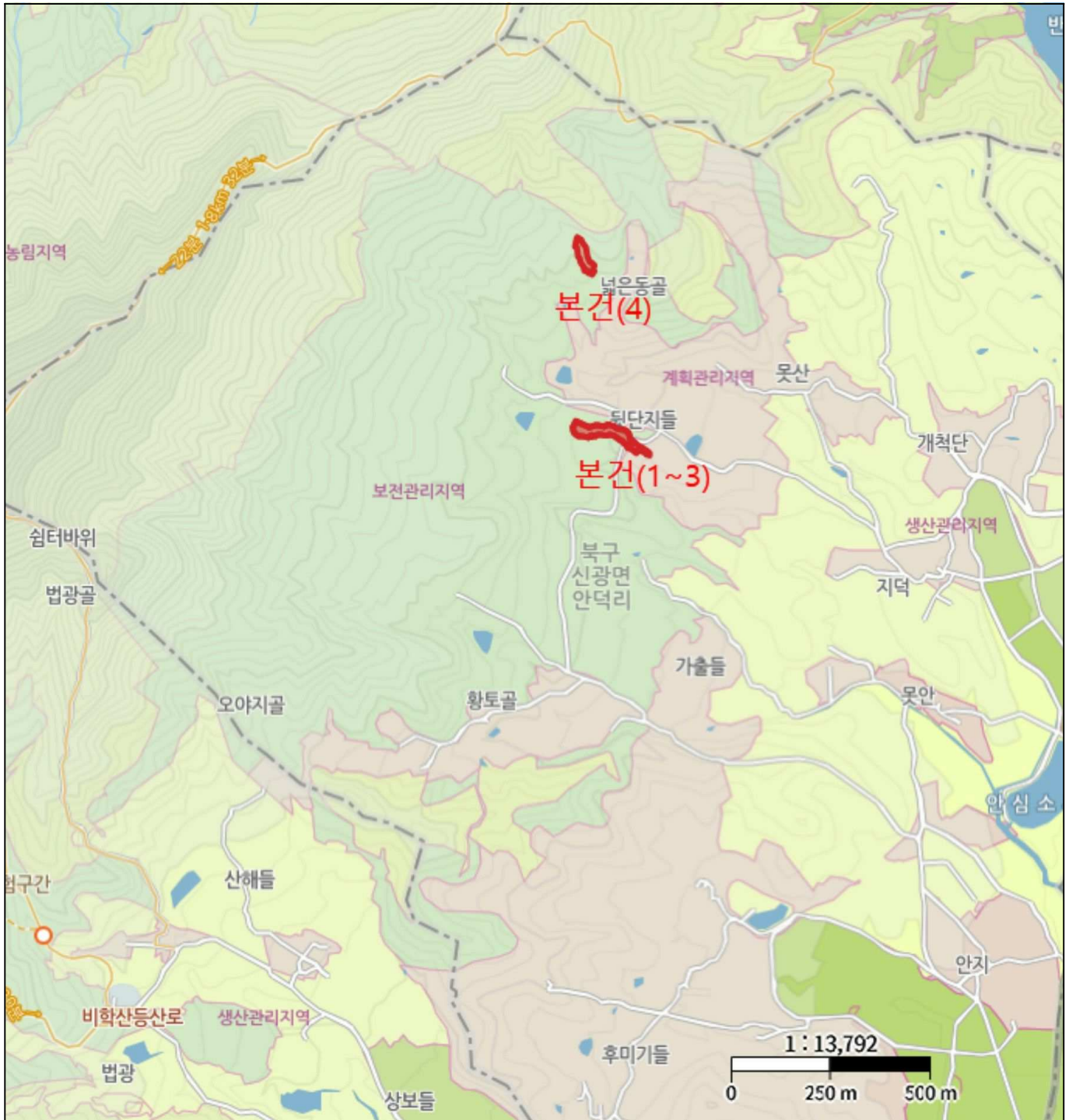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① 임대관계 : 미 상 임.
- ② 기 타 : 없음.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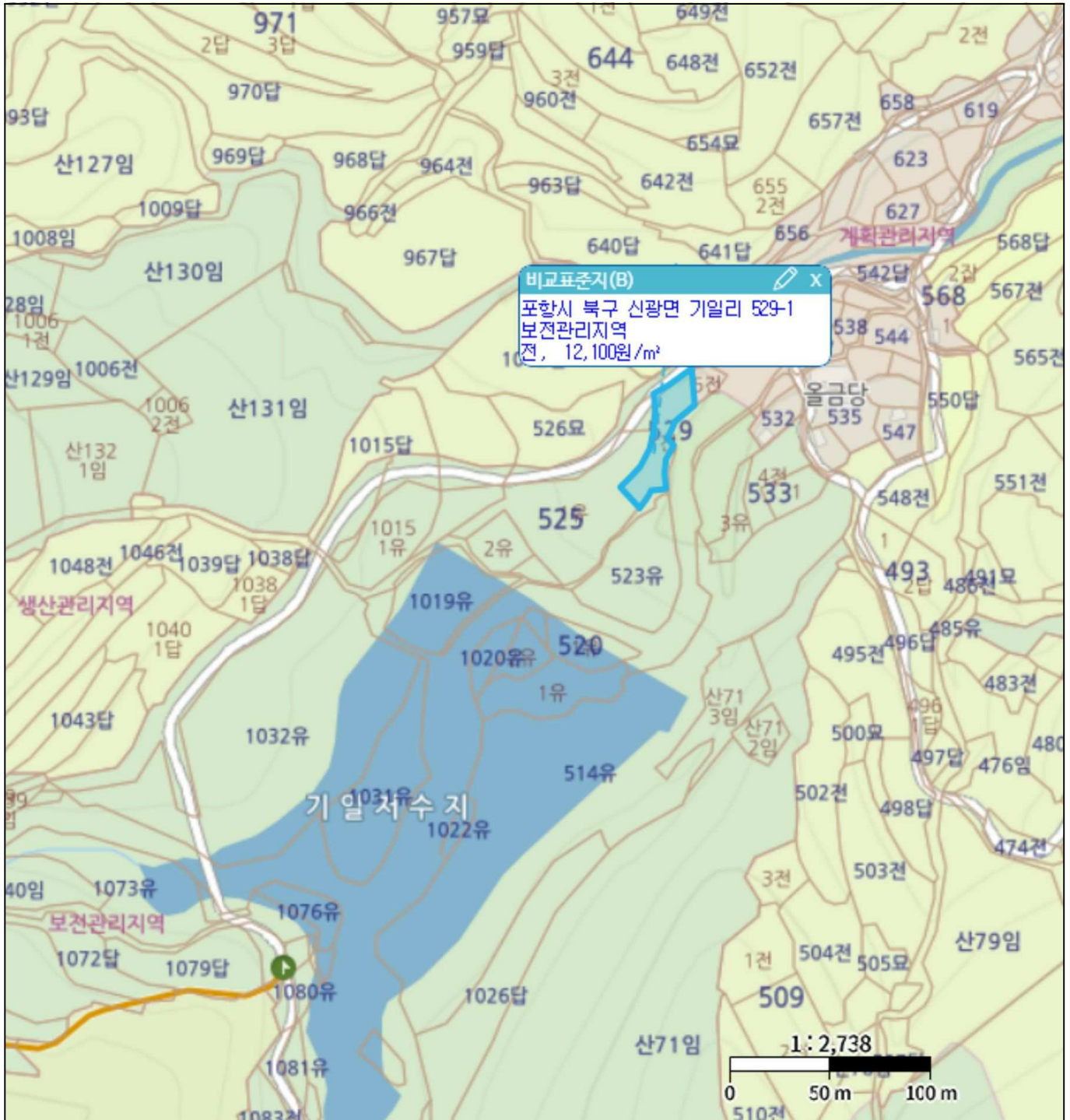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안덕리 992외



위 치 도(표준지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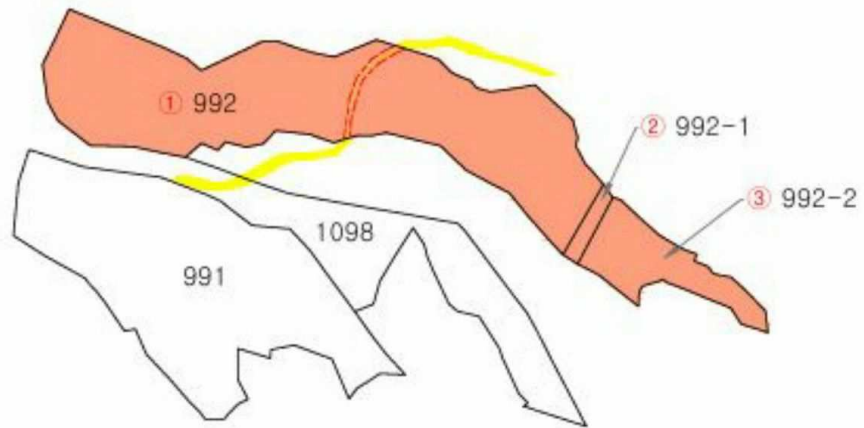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기일리 529-1



지 적 개 황 도

SCALE=1/1700



지 적 개 황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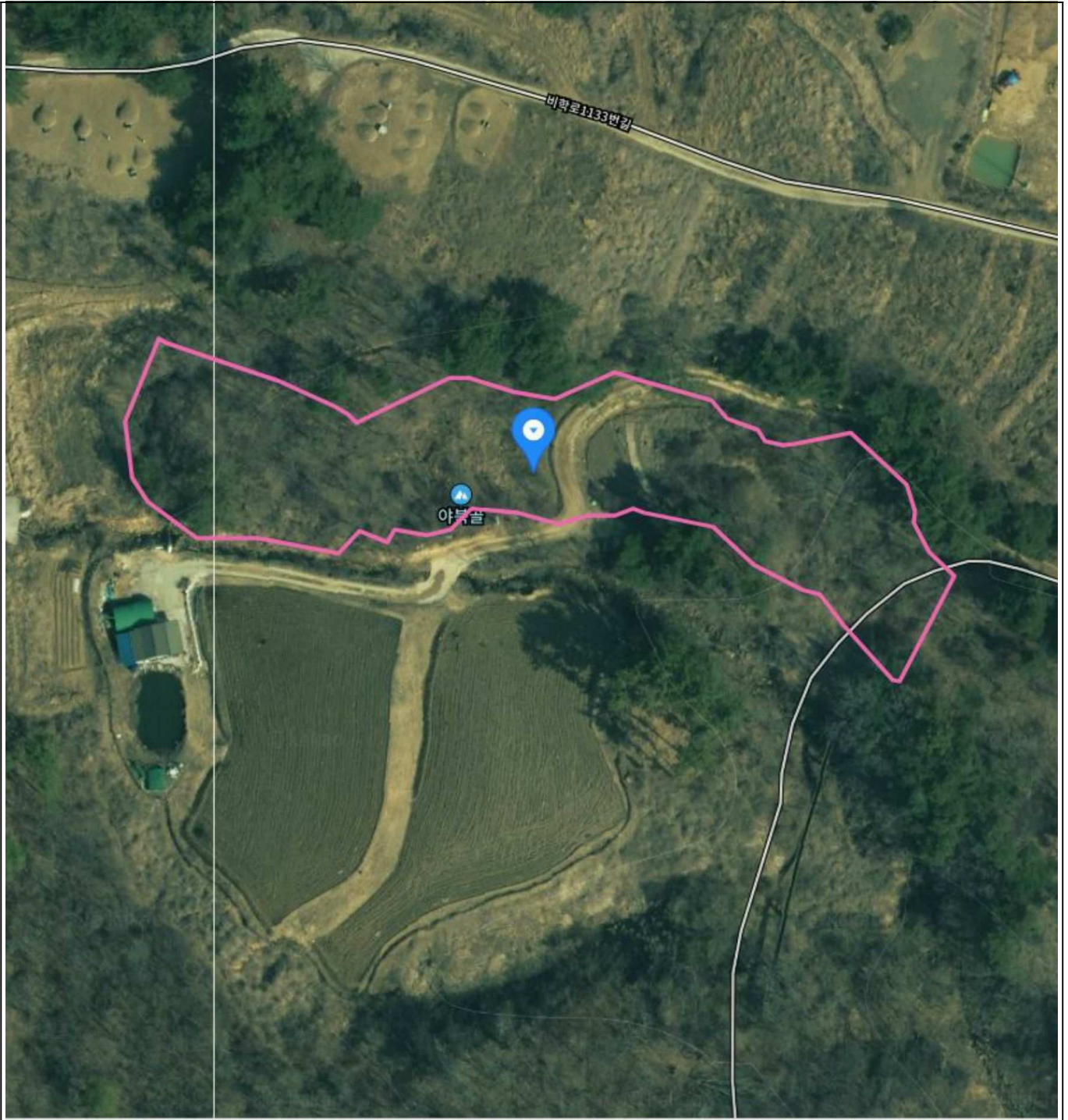
SCALE=1/1200



위성사진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안덕리 99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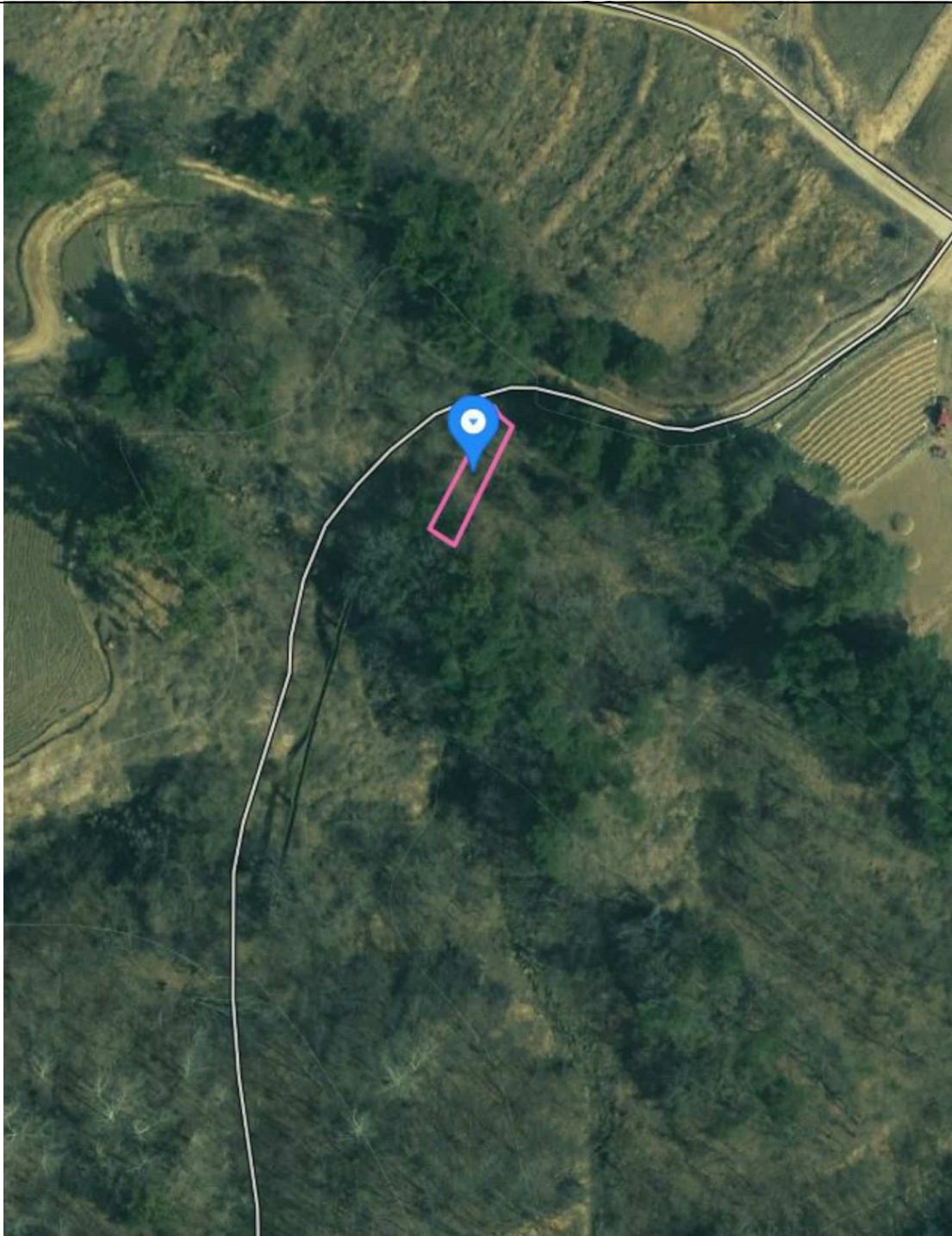


위성사진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안덕리 992-1



위성사진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안덕리 9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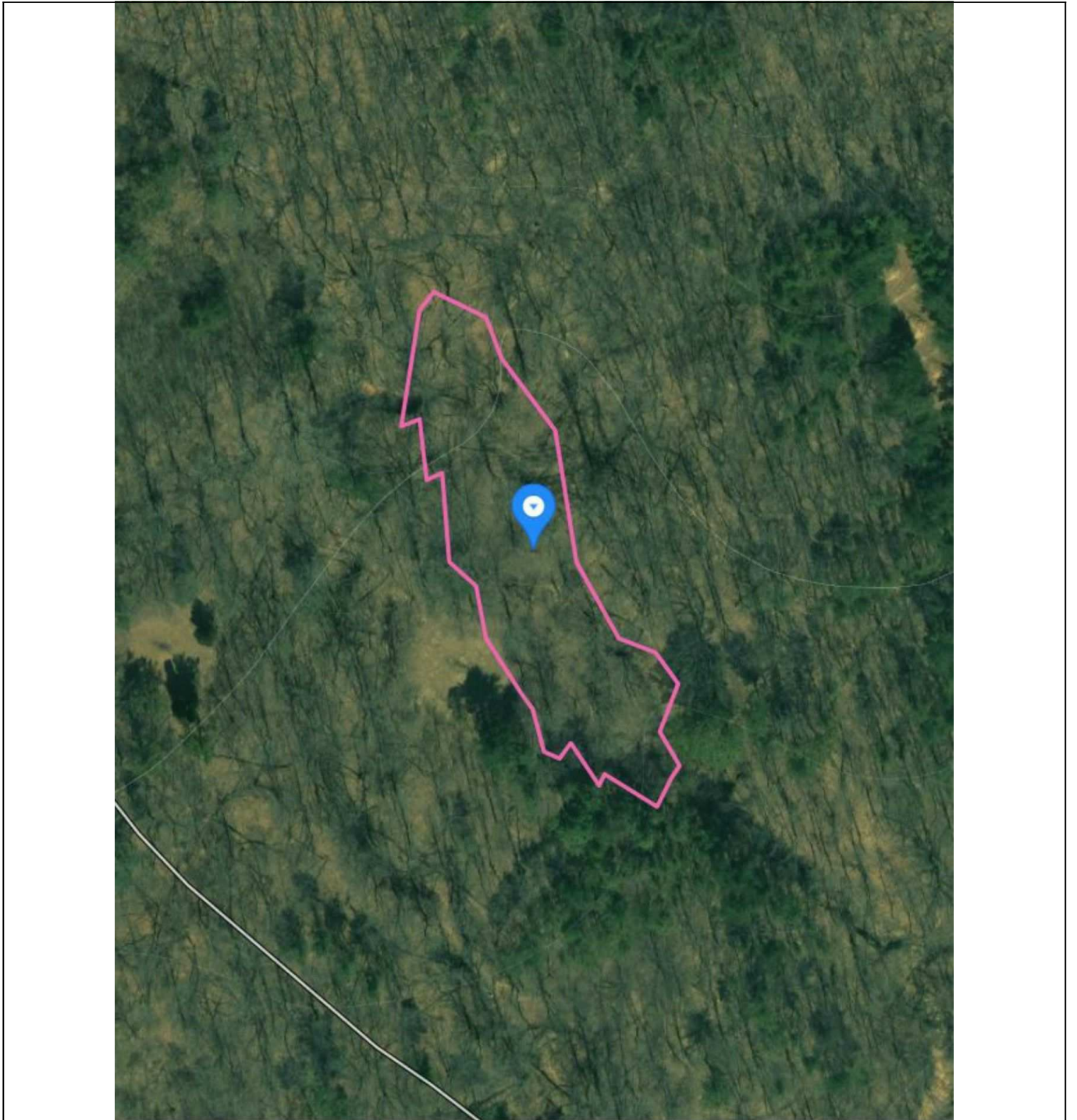


위성사진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안덕리 1012





(1) []



(1) []



(1) []



(2) []



(3) []



(4) []



(4) []